

2022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 지원목적: 여의도 금융중심지로의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 지원유형: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 지원대상

○ 지원대상(붙임1 참고)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
 - 외국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인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국내·외 금융기관**

□ 지원요건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공통 기준	신청기한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임시사무소 개설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고용조건	'22. 4월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일 것	'22. 4월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 초과할 것
개별 기준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자금 지원기준]	
		· 신규고용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 · 교육훈련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인원 산정기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상시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자금 지원기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 ※ 단. 금융인력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유형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에 한정 (신규고용인원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구입 및 설비임차 등)	
기타	지원기간	-	최대 1년 ※ 단,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에는 지원 불가

* 상시 고용인원 : 해당 금융기관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유의사항

- ① 보조금 교부 결정(6월 중) 이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 ② 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말까지('22.12.31.) 집행 완료
- ③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 대상 우선 지원
 - 기 신청자의 경우 '22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지원예산 : 50,000천원 이내
- 지원기준

항 목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 금융인력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유형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에 한정 - 신규고용인원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구입 및 설비임차 등 - 토지·건물 등 금융업무의 직접적 수행과 관련 없는 시설 설비*는 지원 제외 * 노후설비 교체가 아닌 단순 인테리어 시공, 가구 구입 등
신규고용자 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고용인원수*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초과분 * (금융기관)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수 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연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 에는 10명으로 간주 (임시사무소)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수 2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연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 에는 2명으로 간주
교육훈련자 금	○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시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5.17.~6.6.(3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금융투자과(투자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번호 : 02)2133-4771 (보조금 지원담당자)
 - 이 메 일 : gyun21@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금융투자과
- ※ 접수마감일 후 1주 이내 제출서류 별도 링제본하여 10부 제출(중복서류 1회 제출)

○ 제출서류

-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2 참고)
- (금융기관)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3 참고)
- (임시사무소)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4 참고)
- (임시사무소)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5 참고)

□ 유의사항

○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 보조금 예금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정산 방법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 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

□ 기타사항

-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름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금융투자과 담당자(☎02)2133-4771, gyun21@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3.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4. (임시사무소)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5. (임시사무소)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6.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1부. 끝.

붙임 1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대상

- 서울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자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 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외국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서울 금융중심지(여의도)에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인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국내·외 금융기관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6. 사업용 설비 내역 1부.
7.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출예상 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8. 상시 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9.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붙임 3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앞 쪽)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남 / 여)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계 지점 <input type="checkbox"/>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원		보조금 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고용자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자금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② - ①)	명		①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명	
			②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자금 신청인원	명	③ 지원 신청액	(원 × 명 × 원 월)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기관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	명	총 소요액	원	
	교육훈련자금 신청인원	명	④ 지원 신청액	(원 × 명 × 원 월)	
총 지원신청액 (③ + ④)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작성방법]

1. ①번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고용 인원을 기재합니다.
2. ②번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월평균 내국인 상시고용 인원을 기재합니다.
3.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은 ②번(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서 ①번(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4.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6. 상시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7.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8. 교육훈련 실시내용 증빙자료 1부. (교육훈련자금 신청의 경우)
9. 교육훈련 지출예상 증빙자료 1부. (교육훈련자금 신청의 경우)

붙임 4 : (임시사무소)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앞 쪽)

(임시사무소)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지원 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남 / 여)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임시사무소 소재지			
임시사무소 설치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계 지점 <input type="checkbox"/>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상시 고용인원	명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소요 예상내역				
지원 신청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등록, 허가, 인가 등 신청서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6. 사업용 설비 내역 1부.
7.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출예상 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8. 상시 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9.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붙임 5 : (임시사무소)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앞 쪽)

(임시사무소)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임시사무소)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지원 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남 / 여)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임시사무소 소재지					
신규진입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계 지점 <input type="checkbox"/> 외국계 지역본부		보조금 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고용자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자금
임시사무소 설치일자		년 월 일			자본금	원
신규 고용 자금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자금 신청인원	명	
	지원 신청액 ①	원(원 × 명 × 월)				
교육훈 련자금	교육훈련기관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	명	총 소요액		원	
	교육훈련자금 신청인원	명	지원 신청액 ②	(원 × 명 × 월)		
총 지원신청액 (① + 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float: right; 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div>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등록, 허가, 인가 등 신청서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6. 상시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7.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8. 교육훈련 실시내용 증빙자료 1부. (교육훈련자금 신청의 경우)
9. 교육훈련 지출예상 증빙자료 1부. (교육훈련자금 신청의 경우)

□ 사업수행계획 (기 추진내용 포함)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설비구축	· · ·	· ~ · ~ · ~
인재채용		
인재교육		

□ 사업 필요 경비 및 사용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

(자부담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금액·방법)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설비자금	(%)	·	
	고용비	(%)	·	
	교육비	(%)	·	
자부담(소계)		(%)		
		(%)	·	
		(%)	·	
	⋮ ⋮	(%)	·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예: 단가(원)×수량)를 기재하되, 불가할 경우 설명으로 대체
-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 임차료는 편성 가능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지방보조사업자(금융기관)의 주사업 개요

- 회사명/대표
- 설립일
- 설립목적
- 주 소
- 사업분야
-
-
- 임직원 현황

※ 조직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고용자금, 교육자금 등 2개 항목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는 한번만 작성